5분자유발언

신시가지 난방기 인하를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에 대한 제언」

임 말 숙 의원

BUSAN

□공기업과 민간기업 운영 현황

구 분	동력비 지출(억원)				열생산량(Gcal)				열판매 수입(억원) 2017. 9. 10% 인하	
	계	LNG	열요금	전기요금	계	보일러	연료전지	소각로	열요금 인하전	열요금 인하후
'16.7~'17.6 (민간운영)	204	193	3	8	269,890	209,745	6,276	53,869	230	230
'17.7~'18.6 (공단운영)	173	113	33	27	296,768	130,601	102,202	63,965	254	237
차 이	31① 감소	80 감소	30 증가	19 증가	증 26,878	감 79,144	증 95,926	증 10,096	증 24	증 7

자료출처 : 부산환경공단 집단에너지사업소 경영개선 추진실적 보고

□연도별 열 생산.공급현황

구분	열생산량(Gcal)				열공급량(Gcal)				가스사용량(㎥)
	계	보일러	소각열	연료전지	계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평균(%)	100%	78%	18%	4%	100%	95%	2%	3%	-
2015	285,459	235,235	50,224	-	265,113	250,777	6,003	8,333	26,352,220
2016	287,337	235,246	52,091	-	266,504	251,795	6,250	8,459	26,082,490
2017	294,621	193,746	58,717	42,158	270,882	256,263	6,214	8,405	21,181,855
예상(%)	100%	52%	13%	35%	-	-	-	-	전년대비 감51%
2018 (1~5월)	181,723	93,685	24,228	63,810	173,389	165,185	3,133	5,071	10,327,266

※ 열요금 징수현황 : 2016년 244억원

□연도별 열 손실율 현황

구분	열생산량(Gcal)	열공급량(Gcal)	열손실량(Gcal)	열 손실율(%)	도시가스 환산액(억원)
2015년	285,459	265,113	20,346	7.1	17
2016년	287,337	266,504	20,833	7.3	18
2017년	294,621	270,882	23,739	8.1	20

자료출처 : 부산환경공단 집단에너지사업소 홈페이지

밸브 (BM,BT,HD)

에어벤트밸브

드레인밸브

자료출처 : 해운대 열수송배관 기본·정밀점검 용역 중간보고회

㈜부영산전

▣ 기준단가(부산시와 그린에너지간 열수급계약 체결)

1. 고온열

1) 기준단가 : 61,000 원/Gcal

2) 산정방식 : 해당월 LNG평균가격(원/N㎥)×61,000(원/Gcal) / 837(원/N㎥)

2. 저온열

1) 기준단가 : 19,700 원/Gcal

2) 산정방식 : 해당월 LNG평균가격(원/N㎥)×19,700(원/Gcal) / 837(원/N㎥)

※ **전기요금 추가 발생(약25억/년)**

5분자유발언

「옛 해운대역! 상업개발 아닌,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품에..」

문 현 신 의원

국제신문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009면 지역

부산시, 옛 해운대 철도역 정거장 부지도 공원화 추진

총 2만5391㎡ 규모, 공공개발 나서
국토부 소유… 상업개발 승인만 남아
與시장, 여당에 전면 중단 요구 방침

부산시가 옛 해운대 철도 역사에 이어 정거장 부지 일대도 공공개발을 추진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2일 열릴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에 "옛 해운대역 일대의 공원화를 위해 정거장 부지에 대한 정부의 상업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옛 해운대 역사는 지난 1월 이를 관리하는 코레일이 상업개발(본 역사와 부속 역사 2개동 포함 4631㎡)을 포기(국제신문 지난 1월 18일자 1면 등 보도)해 시가 시민공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역사뿐 아니라 해운대역 일대 정거장 부지(2만5391㎡)도 공원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소유자인 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공단)가 상업개발을 추진 중인데, 정부를 설득해 공공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는 사업주관자(㈜성도이엔지, 한국전자금융㈜)가 지정돼, 개발에 관한 국토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국토부가 최종 승인하면 출자회사(SPC)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공공개발은 물 건너가게 된다.

옛 해운대 역사 내 정거장 부지. 국제신문DB

앞서 코레일은 2015년 7월 옛 해운대역사 부지 4631㎡에 30층이 넘는 호텔형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를 조성하려고 백상건설 등 3개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은 2016년 1월 코레일과 토지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상업 개발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이 사업은 시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서병수 전 시장이 제동을 걸었다. 이어서 시장은 지난해 해운대역사 부지는 물론 바로 옆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정거장 부지도 매입하거나 임대해 공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이 대표에 금융·해양·영화영상 분야 수도권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적극 이전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7개 금융기관 등 부산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와 민주당이 진행하는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부산시 국비 확보를 위한 자리다. 이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누락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전동차 교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범 국가적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 등에 필요한 국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선정 김화영 기자 sjlee@kookje.co.kr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

성도이엔지-한국전자금융, 개발사업 법인설립 초읽기

국제신문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 입력 : 2018-11-14 20:17:59 | 본지 1면

- "2013년 상업화 협약 유효"
- 철도시설공단 억지주장도
- 시 "시민반대 땐 추진 불가"

부산시가 공원 등지로 공공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2만5000㎡)가 상업 개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개발 사업 주관자인 성도이엔지와 한국전자금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 사업 승인을 받았다. 정거장 부지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앞서 지난해 7~10월 '개발 사업 주관자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성도이엔지 등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성도이엔지 등은 이에 따라 현재 출자자를 모집 중이며, 올해 안에 SPC 설립을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의 공공개발이 물 건너가고, 사실상 상업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역사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약속도 물거품이 된다.

이런 와중에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내 상업 시설 설립 내용을 담은 과거 협약서가 유효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일부를 공원화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2013년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유효하다"고 했다. 2013년 허남식 전 시장 당시 '동해남부선 철도자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협약서'의 부속서에는 철도시설공단 개발 사업의 하나로 '옛 해운대역 송정역 일원에 상업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은 부글부글 끓는다. 인근 해리단길 상인들은 "센텀시티부터 송정까지 이어지는 옛 철길의 중심에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며 "서병수 전 시장에 이어 오 시장도 공원화를 약속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옛 해운대역사 앞에서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공원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도이엔지 측은 "SPC가 설립되지 않아 (상업 시설 건립은) 정해진 게 없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시 관계자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시민과 함께 사업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개발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시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

성도이엔지-한국전자금융, 개발사업 법인설립 초읽기

국제신문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 입력 : 2018-11-14 20:17:59 | 본지 1면

- "2013년 상업화 협약 유효"
- 철도시설공단 억지주장도
- 시 "시민반대 땐 추진 불가"

부산시가 공원 등지로 공공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2만5000㎡)가 상업 개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개발 사업 주관자인 성도이엔지와

기됐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일부를 공원화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2013년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유효하다"고 했다. 2013년 허남식 전 시장 당시 '동해남부선 철도 자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협약서'의 부속서에는 철도시설공단 개발 사업의 하나로 '옛 해운대역 송정역 일원에 상업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장에 이어 오 시장도 공원화를 약속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옛 해운대역사 앞에서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공원화 추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도이엔지 측은 "SPC가 설립되지 않아 (상업 시설 건립은) 정해진 게 없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시 관계자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시민과 함께 사업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개발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시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thinkboy7@kookje.co.kr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옛 해운대 역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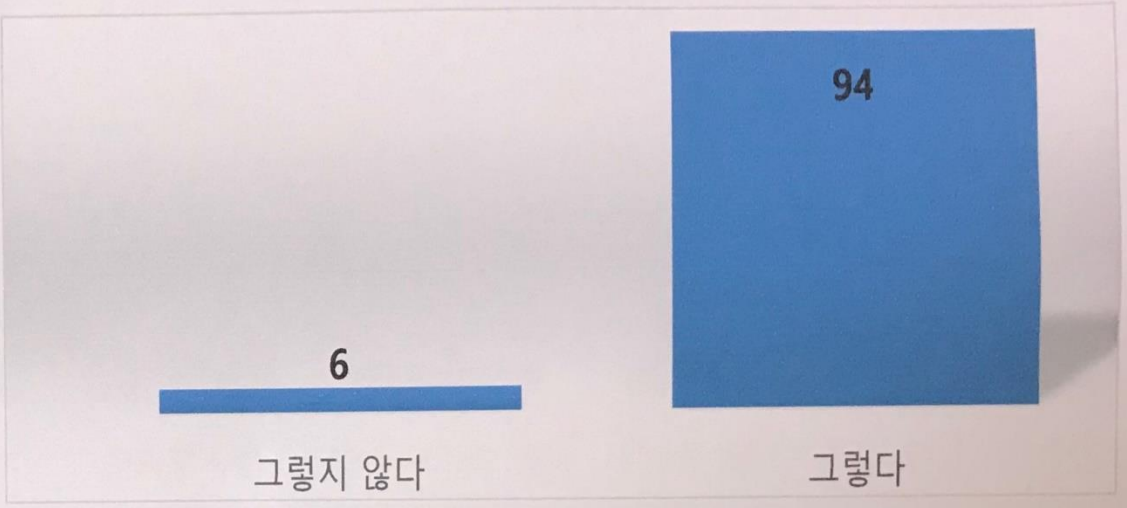

약 80년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옛 해운대 역사와 철도부지는

시민에게 환원(94%)

우1동 주민 설문조사(2018. 7. 14~27, 응답자: 548)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

성도이엔지-한국전자금융, 개발사업 법인설립 초읽기

국제신문 이승은 기자 thinkboy7@kookje.co.kr | 입력 : 2018-11-14 20:17:59 | 본지 1면

- "2013년 상업화 협약 유효"
- 철도시설공단 억지주장도
- 시 "시민반대 땐 추진 불가"

부산시가 공원 등지로 공공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2만5000㎡)가 상업 개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발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개발 사업 주관자인 성도이엔지와 한국전자금융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 사업 승인을 받았다. 정거장 부지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앞서 지난해 7~10월 '개발 사업 주관자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성도이엔지 등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성도이엔지 등은 이에 따라 현재 출자자를 모집 중이며, 올해 안에 SPC 설립을 완료해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의 공공개발이 물 건너가고, 사실상 상업 개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해운대역사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약속도 물거품이 된다.

이런 와중에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내 상업 시설 설립 내용을 담은 과거 협약서가 유효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철도시설공단 측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일부를 공원화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2013년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MOU)는 유효하다"고 했다. 2013년 허남식 전 시장 당시 '동해남부선 철도자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협약서'의 부속서에는 철도시설공단 개발 사업의 하나로 '옛 해운대역 송정역 일원에 상업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은 부글부글 끓는다. 인근 해리단길 상인들은 "센텀시티부터 송정까지 이어지는 옛 철길이 주상에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며 "너무 속 터 시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시 관계자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시민과 함께 사업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개발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시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5분자유발언

「마린시티, 안전거리 확보가 해운대 관광자원이다」

원 영 숙 의원

마린시티 야경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 (5M 친수호안)

마린시티 해일 피해

마린시티 해일 피해

구남로 광장 전경

구남로 광장, 야간 공연을 즐기는 주민들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 (5M 친수호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30. 원영숙 의원 외 17명 공동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30.

다. 상 정 일 자 : 2018. 12. 11.(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기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 조정에 따른 지급 기준변경(안 제3조 제1항)

- 2019년 :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 = 월 2,540,290원
- 2020년 ~ 2022년 :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

❍ 여비 지급 기준변경(안 제4조 제2항)

- 기존 :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
- 개정(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표5〉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2018. 11. 20일자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반영하여 현행 월 2,475,920원에서 월 2,540,290원으로 인상하고
  ▷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　　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2,475,920원”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1 지급기준표에 따른 월정수당”으로 한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제3조 관련>

연도	월정수당
2019년	월 2,540,29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제4조제2항 중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
<td>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월 2,475,920원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

② 생략

제4조(여비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별표 1] <개정 1996. 3.25, 1997. 4.12, 2000. 3. 6, 2002. 6.15, 2006. 4. 5, 2007. 1.10>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구분 \ 기준지급액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의장 ·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원	46,000원	25,000원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원	46,000원	25,000원

비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광역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르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td>
<td>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1 지급기준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1호

연도	월 정 수 당
2019년	월 2,540,29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td>
</tr>
</table>

별표2호

[별표 2] <개정 96.3.25, 2000.3.6>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미불화)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준 비 금 15일 이상 30일 미만	준 비 금 30일 이상
의 장 · 부의장	1. 등급구분 :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 럽 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3) 유 럽 주 :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브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엘살바도로,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3) 유 럽 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지니,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등 정액	실 비 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의 원			2 등 정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	130	155	180

별표2호 삭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8. 김경호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8.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경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및 사무지원 등(안 제2조 ~ 제4조)

❍ 인력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 ~ 제6조)

❍ 포상(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1조(목적)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대행기관인 해운대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부터 제4조(지도 및 감독)까지는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및 사무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인력 등 지원)부터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까지는 인력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포상)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　　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제정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같은 법 제9조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 각종 공공 계약체결을 매개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친인척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취업청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청렴서약서'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를 포함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문구를 포함한[별지2호서식]청렴서약서 내용 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 각종 공공 계약체결을 매개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친인척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취업청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청렴서약서'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문구를 포함한 별지제2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서」제2호, 제3호, 제5호중 금품, 향응 다음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문구를 삽입하여 각종 공공계약체결을 매개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친인척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취업청탁 예방으로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 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2호서식] 계약체결 상대방용

청렴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제2호서식] 계약체결 상대방용 **청렴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1.(생 략) 2. 입찰,----------증여,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증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4.(생 략) 5. 회사----------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위 청렴이행----------. 해운대구청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계약체결 상대방용 **청렴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1.(현행과 같음) 2. 입찰,----------증여,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증여,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제공한 사실----------. 4.(현행과 같음) 5. 회사----------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위 청렴이행----------. 해운대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9. 김백철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9.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백철 의원)

가. 제안이유

❍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 유도 및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정비(안 제2조 관련 별표1)

❍ 감면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2)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인 사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건

전한 스포츠 활동 유도 및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중에서 게이트볼장 “4면”을 “3면”으로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 안 별표2 제2호 바목 중“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현 법률 명칭에 맞게 수정하고, 같은 호 자목 중“12세 이하의 어린이”를 “8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로 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수정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 유도 및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　　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명칭의 장산게이트볼장란 중 “해운대구 좌3동 1384”를 “해운대구 좌동 1384”로 하고 행복체육공원란 중 “그라운드골프장1면 게이트볼장 4면”을 “그라운드골프장1면 게이트볼장 3면”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바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 호 자목 중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8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로 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규 모	사용료 징수 여부
좌동테니스장	해운대구 좌동 1340-1	테니스장 5면	징수
센텀테니스장	해운대구 재송동 1207	테니스장 3면	징수
반송테니스장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0	테니스장 2면	징수
좌동1배수지 테니스장	해운대구 좌동 1371-1	테니스장 3면	징수
장산 인조잔디구장	해운대구 좌동 1371-1	축구장 1면	징수
센텀 운동장	해운대구 재송동 1207	축구장 1면	징수
송정체육공원	해운대구 송정동 155-13	테니스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1면	무료
장산게이트볼장	해운대구 좌3동 1384	게이트볼 4면	무료
반여배수지 체육공원	해운대구 반여동 1291-99	배드민턴 2면	무료
수영강시민공원 족구장	해운대구 반여동 1502-16	족구장 6면	무료
행복체육공원	해운대구 재송동 886-2일원	그라운드골프장1면 게이트볼장 4면	무료
반송배수지 체육공원	해운대구 반송동 250-2841	게이트볼장 2면	무료

개 정(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규 모	사용료 징수 여부
좌동테니스장	해운대구 좌동 1340-1	테니스장 5면	징수
센텀테니스장	해운대구 재송동 1207	테니스장 3면	징수
반송테니스장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0	테니스장 2면	징수
좌동1배수지 테니스장	해운대구 좌동 1371-1	테니스장 3면	징수
장산 인조잔디구장	해운대구 좌동 1371-1	축구장 1면	징수
센텀 운동장	해운대구 재송동 1207	축구장 1면	징수
송정체육공원	해운대구 송정동 155-13	테니스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1면	무료
장산게이트볼장	해운대구 좌동 1384	게이트볼 4면	무료
반여배수지 체육공원	해운대구 반여동 1291-99	배드민턴 2면	무료
수영강시민공원 족구장	해운대구 반여동 1502-16	족구장 6면	무료
행복체육공원	해운대구 재송동 886-2일원	그라운드골프장1면 게이트볼장 3면	무료
반송배수지 체육공원	해운대구 반송동 250-2841	게이트볼장 2면	무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테니스장	단체사용	코트1면당 (2시간)	20,000	
	개인사용	1인당 (2시간)	2,000	
축구장 (단체사용)		1시간	40,000	

[비 고]

○ 사용료 감면 내용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제8조(사용료의 면제)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와 그 가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자. 12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만 65세 이상의 사람
   차.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축구장 사용시 해운대구체육회 가맹단체

○ 기타사항

1. 테니스장을 토·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2. 테니스장의 야간사용은 평일은 시간당 15,000원을, 토·일·공휴일은 시간당 20,000원을 징수한다.
3. 테니스장 월회원 이용료는 1일 해당이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의 70%를 징수한다. 다만,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4. 단체사용은 테니스장은 8인 이상, 축구장은 2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을받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가 단체 정족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 정(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테니스장	단체사용	코트1면당 (2시간)	20,000	
	개인사용	1인당 (2시간)	2,000	
축구장 (단체사용)		1시간	40,000	

[비 고]

○ 사용료 감면 내용

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제8조(사용료의 면제)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와 그 가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자. 8세 이하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만 65세 이상의 사람
   차.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축구장 사용시 해운대구체육회 가맹단체

○ 기타사항

1. 테니스장을 토·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2. 테니스장의 야간사용은 평일은 시간당 15,000원을, 토·일·공휴일은 시간당 20,000원을 징수한다.
3. 테니스장 월회원 이용료는 1일 해당이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의 70%를 징수한다. 다만,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4. 단체사용은 테니스장은 8인 이상, 축구장은 22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을받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가 단체 정족수 이상이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창출과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구민의 고용촉진과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 ~ 제9조)

❍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 정부 및 민선7기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일자리의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까지 포함하고, 「일자리위원회」의 기능강화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편안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1조(목적)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책무)는 구청장의 추진해야할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는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취업지원사업)는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및 제9조(업무의 위탁)는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추진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제18조(운영세칙)까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기간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밀접한 생활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제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위원회가 심의하여야할 사항’ 조항을 삭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붙　　임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위원회가 심의하여야할 사항 5 6	제7조(사업자금 대여) 삭제 4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심사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일자리창출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근로자ㆍ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5.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창출과장)

가. 제안이유

❍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화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동시장의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를 대한 정의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4조)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 (안 제5조 ~ 제9조)

❍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수당)에 관한 내용과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화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노동시장의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1조(목적)에서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적용대상)에서는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추진해야할 분야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부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제12조(생활임금의 결정)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수당)에 관한 내용과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생활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독립적인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내용 중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설치한다’ 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 제5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며,

❍ 제12조 (생활임금의 결정)의 내용 중 제2항에서 ‘2월 28일까지’를 매년 연말 전 결정 고시하도록 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 올 연말 조례 공포 시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시기가 현실적으로 촉박하므로 제12조 제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붙　　임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 (생활임금의 결정) ②────────────────── 2월 28일까지 －－－－－－－－－－－－－－－－－－－－－－－－－－－－－－. ③─────────────────────결정한다.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삭제 ②────────────────── 12월 31일까지 －－－－－－－－－－－－－－－－－－－－－－－－－－－－－－. ③─────────────────────결정한다. 삭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임금의 결정) ①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12월 31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진흥과장)

가. 제안이유

❍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 분쟁조정 등 상생협력에 대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여 종합적 심의를 실시하고, 아울러 해운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구를 통해 각종 경제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 필요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위원회 구성·기능(안 제1조 ~ 제4조)

❍ 위원장 직무(안 제5조)

❍ 위원 임기·위촉, 회의개최 등(안 제6조 ~ 제9조)

❍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 분쟁조정 등 상생협력에 대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여 종합적 심의를 실시하고, 아울러 해운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구를 통해 각종 경제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1조(목적)부터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임기)부터 제9조(회의 등)까지는 위원의 임기, 제척 및 기피, 위촉해제,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부터 제13조(운영규정)까지는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해운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구를 통해 각종 경제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해운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관심있는 각계각층의 많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2차례에서 1차례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붙 임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1부. 끝.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금 대여) ————————————————————1차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등 영세상점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균형발전, 분쟁조정, 구의 각종 경제활성화 시책심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기업인, 교수, 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 전문가.
2.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3. 부구청장, 일자리산업국장, 경제업무담당 부서장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실태조사·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4.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항 각 호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제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분과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경제활성화지원, 유통상생협력, 유통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 선출,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 및 기능 등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1조(간사)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해운대 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안 제1조~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해촉(안 제4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자료 협조 등(안 제7조~제12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 급변하는 해운대 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검토결과

○ 안 제1조(목적)부터 제3조(기능)까지는 교통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 안 제4조(구성)부터 제6조(위원의 해촉)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해촉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부터 제12조(운영세칙)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자료 협조 등에 관해 규정하여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 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운대구의 장·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4.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건설·건축 등 교통분야에 관련된 소관 국장 및 부서장
2. 해운대구의회 의원
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4.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교통분야에 관심이 있는 운수업 종사자 및 주민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자료 협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관련 자문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심 사 보 고 서

2018. 11.19.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행복나눔과장)

가. 제안이유

❍ 행정재산 취득목적 변경(장애인복지관 잔여부지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 우리구 노인복지관은 2개소로 장산노인복지관(좌동), 어진샘노인복지관(재송동)이 있으나,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저소득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반여·반송 지역의 노인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분관 신축이 필요한 상황임.

▷ 반여·반송 지역은 2018.7월 기준 65세이상 노인비율이 18.5%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고 최근 비노인 인구의 지속적 유출 및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진행 추이를 볼 때 3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 가능한 상황임.

▷ 이에 당초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부지 매입하였으나, 계획 변경에 따른 잔여 부지에

1)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여가문화 거점기관 확충 필요

2) 지역 편중된 노인복지관을 반여·반송 지역 유치로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추진코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취득(처분)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면적)	취득금액	취득시기	주관부서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반여동 1502-44번지 외 2필지	지하1층, 지상4층 (677.43㎡)	489,404	2017	행복나눔과

나. 사업개요

1) 위　　치 : 반여동 1502-44 일부, 1502-68, 1502-138 등 3필지
2) 부지면적 : 255.4㎡
3) 건립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77.43㎡
4) 사업기간(예정) : 2017. 10월 ~ 2019. 12월
5) 총사업비 : 18.7억원(시비 15억, 구비 3.7억)　※ 부지매입비 별도 (공사비 17.63억, 실시설계비 1.07억)

다. 추진상황

1) 현재까지 추진사항
   가) 2017. 2. :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계획 수립
   나) 2017. 3. : 2018년 노인복지관(분관) 건립 부산시 기능보강사업 신청
   다) 2018년 본예산 :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구비 1.07억원 확보
   라) 2018. 3. : 2019년 노인복지관(분관) 건립 기능보강사업 신청
   마) 2018. 5. : 부산시 사회보장위원회 원안 가결
   바) 2018. 8. : 2019년 노인복지관(분관) 건립 기능보강사업 신청
2) 향후 추진 계획(안)
   가) 2018. 12. ~ 2019.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2019. 4. : 공사계약 및 착공
   다) 2019. 12. : 공사준공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반여·

반송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에 따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 우리구 노인복지관은 2개소로 장산노인복지관(좌동), 어진샘노인복지관(재송동)이 있으나,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저소득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반여·반송 지역 노인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분관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 반여·반송 지역은 2018. 7월 기준 65세이상 노인비율이 18.5%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고 최근 비노인 인구의 지속적 유출 및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진행 추이를 볼 때 3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 가능한 상황임.

❍ 이에 당초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부지 매입하였으나, 계획 변경에 따른 잔여 부지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여가문화 거점기관 확충 및 지역 편중된 노인복지관을 반여·반송 지역 유치로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 사업비 확보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4.89억원, 건축비 17.63억원, 실시설계비 1.07억원 등 총 22.52억원이 소요되나, 부지는 2017년도에 취득하였으며 부지매입비 중 시비 9억을 제외한 구비 3.7억원(2018년도 1.07억원 확보)이 소요되며,

❍ 노인복지관 분관의 활용 방안과 건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도 주민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붙　　임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255.4 (1)	489,404	1	255.4 (1)	489,404	
		건물				1	677.43 (1)	1,763,000	1	677.43 (1)	1,763,000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1	255.4 (1)	489,404	1	255.4 (1)	489,404	
		건물				1	677.43 (1)	1,763,000	1	677.43 (1)	1,763,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10㎜ × 297㎜(일반용지 60g/㎡)

201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취득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수량)				
1	잡종지	반여동 1502-44 일부	100.4 (1)	208,885	2017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2	대 지	반여동 1502-68	84 (1)	140,280	2017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3	잡종지	반여동 1502-138	71 (1)	140,239	2017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4				1,763,000	2019. 12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주)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 및 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13.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1. 임말숙 의원, 김혜진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 (제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혜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신건강 상담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3) 지원대상 가구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규정(안 제4조)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지원(안 제5조)

5)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등 지급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 한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 저장강박증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도 않고 저장하는 일종의 행동장애로 미국 정신의학회는 저장강박증을 독립된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 우리구의 경우 저장강박 의심가구 13세대에 대하여 주거정리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30가구임
-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치함으로써 벌레서식악취 등 위생뿐만 아니라 화재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이웃들에게 쓰레기 악취로 인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수거 후 쓰레기 다시 저장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 뿐만 아니라 치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 및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봉사자 처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13.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적용 법령 사항 및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안 제9조)
- 2018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법령 변경(안 제5조)
3) 일본어식 표현 정비(안 제1조 ~ 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적용법령사항 및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으로.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2항에서 규정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본 조례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한 것으로

- 「의료급여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회계존속기한 연장과 적용법령 및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한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6. (생 략)	제2조(기금의 재원) ----------. 1. ~ 3. (현행과 같음) 4. ---------- 따른 ---------- 5. ---------- 따른 ---------- 6. (현행과 같음)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 따른 ----------.

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6조(수입 등) ①기금운용관은 법 제21조에 의한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 등) ①---------- 따른 ----------따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따른 ----------따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독촉장)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독촉장) ---------- 따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제8조(준용) ---------- 따른

의한다. <신 설>	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1. 13.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5년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관련 조례 사전심의시 통보된 의견 반영 [기획조정실-9587(2018.9.11.)]

나. 주요내용

1) 중복 적용된 상위법령 정비(안 제3조)

2)「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지하수 조례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독촉관련 규정, 납부기한 규정 및 도달주의 규정 정비(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조문의 중복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 2항에서 규정한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본 조례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제7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한 것으로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첨 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에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 및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에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생 략)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현행과 같음) ②----------60일간---. <삭 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삭 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6조(준용)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준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제18조(서류의비치) ①(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 독촉장	<삭 제>
3.·4. (생 략)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 11. 13.

주민도시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11. 2. 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2.

다. 상 정 일 자 : 2018. 11. 13. (1차 회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과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구분	전 체			장기미집행시설(10년이상)			미집행시설(10년미만)		
	개소	면 적 (㎡)	사업비 (억원)	개소	면 적 (㎡)	사업비 (억원)	개소	면 적 (㎡)	사업비 (억원)
합 계	166	326,650	7,340	163	324,142	7,275	3	2,508	65
도 로	139	286,177	6,550	136	283,669	6,485	3	2,508	65
주차장	11	15,057	446	11	15,057	446	0	0	0
공 원	8	19,489	221	8	19,489	221	0	0	0
기 타	8	5,927	123	8	5,927	123	0	0	0

※ 기타시설(공공공지 5, 학교 1, 공공청사 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본 「2018년 해운대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와 3년 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166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139개소, 주차장 11개소 공원 8개소, 공공용지 5개소, 학교 1개소, 공공청사 2개소가 있으며. 도시 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10년미만 시설이 3건으로 1.8%이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163건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2020. 7. 1. 실효대상 시설은 98건으로 전체의 59.0%이며 도로 95건, 주차장 2건, 공원 1건 등임

❍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 (2018~2020)가 57건에 34.3%이고, 2-2단계 (2023 이후)는 89건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음.
(※ 비재정 20건, 2 -1 단계는 1단계의 계속사업으로 집계제외)

❍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만히 수립 시행하기 위한 사전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법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나,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제시**

7. 첨　　부 :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안.　끝.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 견 제 시 의 건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만히 수립 시행하기 위한 사전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와, 3년 후에 시행하는 2단계로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166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이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63건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20. 7. 1. 실효대상 시설은 98건으로 전체의 59.0%에 이르러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나,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것입니다.

○ 그리고 장래 공익적 측면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속한 재원 마련으로 우선순위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 11.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된 예산안

가.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계		572,239	555,158	17,081	3.08
일 반 회 계		551,539	534,663	16,876	3.16
특 별 회 계		20,700	20,495	205	1.00
	주 차 장	17,277	17,074	203	1.19
	의료급여기금	1,020	1,018	2	0.21
	지하수관리	1,814	1,814	0	0.00
	기 반 시 설	325	325	0	0.00
	주거환경개선사업	212	212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2	52	0	0.00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세입예산 주요내역
				증감액	증감률	
계		572,239	555,158	17,081	3.08	
일반회계		551,539	534,663	16,875	3.16	
	지방세	121,088	110,988	10,100	9.10	재산세(25억), 등록면허세(70억), 주민세(6억)
	세외수입	33,016	30,904	2,112	6.84	사용료(600만원), 징수교부금(11억 5,900만원) 수수료(△6,500만원), 부담금(△4,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6,100만원), 기타수입(6억 8,900만원), 지난연도수입(3억)
	지방교부세	8,654	7,019	1,635	23.29	특별교부세(16억 3,500만원) -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3,500만원)

					- 좌4동 문화복합센터 건립비(5억) - 반송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1억) - 장애인복지관 건립(5억) -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2억) - 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조정교부금	30,963	30,411	552	1.82	자치구 조정교부금(5억 5,200만원) - 재원조정교부금(3억 8,200만원)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2,000만원) - (구)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용역(1억 5,000만원)
보조금	323,551	321,074	2,476	0.77	국비(△2억 3,700만원), 시·도비(27억 1,300만원)
보전수입등	34,267	34,267	0	-	
특별회계	**20,700**	**20,495**	**205**	**1.00**	
세외수입	8,823	8,989	△166	△1.84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금 징수(△1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	130	0	130	순증	특별교부세(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1억 3,000만원)
보조금	1,906	1,665	241	14.48	국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0만원), 시·도비(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2억 3,900만원)
보전수입등	9,840	9,841	0	-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8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5,515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세 25억원, 등록면허세 70억원, 주민세 6억원, 특별교부세 16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 시비보조금 27억원 등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2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에서 24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억 3천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4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1)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	증감률 (%)
계	551,539	100	534,663	100	16,875	3.16
일반공공행정	23,684	4.29	24,170	4.52	△485	△2.01

공공질서및안전	11,778	2.14	10,145	1.90	1,632	16.09
교 육	2,532	0.46	2,529	0.47	3	0.14
문화및관광	19,094	3.46	19,156	3.58	△62	△0.32
환 경 보 호	20,483	3.71	21,361	4.00	△878	△4.11
사 회 복 지	319,072	57.85	317,968	59.47	1,103	0.35
보 건	15,759	2.86	15,478	2.90	281	1.82
농림해양수산	4,347	0.79	3,919	0.73	428	10.92
산업·중소기업	1,606	0.29	1,611	0.30	△4	△0.28
수송및교통	18,368	3.33	18,048	3.38	320	1.77
국토및지역개발	11,395	2.07	10,922	2.04	473	4.33
예 비 비	18,267	3.31	3,638	0.68	14,629	402.12
기 타	85,147	15.44	85,712	16.03	△565	△0.66

○ 일반회계 세출부분 분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 5,515억 3천만원에 대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중 구성비가 높은 순은 사회복지분야 3,190억 7천만원(57.85%), 기타 851억 4천만원(15.44%), 일반공공행정분야 236억 8천만원(4.29%)으로 전체 예산의 77.58%를 차지하고 있음.

○ 기정예산 대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146억 2천만원이 늘어나 402.12% 대폭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6억 3천만원이 늘어나 16.09%,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 2천만원이 늘어나 10.92% 증가하는 등 8개 분야는 증가하였으며,
- 환경보호분야는 8억 7천만원이 줄어 4.11% 감소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억 8천만원이 줄어 2.01%, 기타분야에서 5억 6천만원이 줄어 0.66% 감소하는 등 5개 분야는 감소하였음.

(2)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금액	증감 비율(%)	예산액 및 주요 증감내역
총 계		551,539	534,663	16,875	3.16	
의회사무국		1,418	1,416	1	0.12	•의회운영업무추진비(2.8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1.1백만원)
기획조정실		19,766	4,510	14,561	322.85	•예비비(146억), 청사포 몽돌해변 마스트플랜 용역(22백만원)
감사담당관		148	149	△0.7	△0.47	•집행잔액 반납
행정관리국	소 계	92,442	92,806	△364	△0.39	
	행정지원과	74,758	76,439	△1,680	△2.20	•선거관리 보전비용 등(8억 24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6억 84백만원)
	재무과	7,540	6,808	732	10.76	•좌4동 문화센터건립(6억), 반송2동 주민센터 내진보강(1억)
	교육협력과	7,992	7,379	612	8.30	•상당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6억)
	세무1과	842	842	△0.2	△0.02	•집행잔액 반납
	세무2과	557	565	△7	△1.39	•집행잔액 반납
	민원여권과	751	771	△19	△2.57	•집행잔액 반납
일자리산업국	소 계	36,515	35,515	1,000	2.82	
	관광문화과	5,508	5,595	△86	△1.55	•아쿠아리움 용역(△50백만원)
	일자리창출과	17,165	17,066	99	0.58	•마을기업 육성사업(30백만원),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90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80백만원)
	경제진흥과	3,044	2,784	219	7.89	•유기동물 입양센터 조성(3억) •양식어장 정화사업(△1억 10백만원)
	늘푸른과	10,836	10,069	767	7.62	•대천 산림문화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2억 50백만원) •반송 근린공원 조성사업(2억 80백만원) •(구)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용역(1억 50백만원) •장산 등산로 정비사업(1억 50백만원)
사업소	소 계	11,246	11,868	△622	△5.24	
	관광시설관리사업소	6,427	6,873	△446	△6.49	•청사포 관광안내소 부지매입(△4억 39백만원)
	해운대문화회관	1,310	1,349	△38	△2.85	•집행잔액 반납
	인문학도서관	3,508	3,646	△137	△3.78	•집행잔액 반납
동	소 계	5,126	5,310	△184	△3.47	•중2동 청사수선 시설비(17백만원) •반여1동 문화센터 방수공사(6백만원) •반송2동 화장실 방수 및 개보수(8백만원)

부서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및 주요 증감내역
				금액	비율 (%)	
주민생활지원국	소계	331,348	331,046	301	0.09	
	복지정책과	30,615	29,899	715	2.29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6억 17백만원) •긴급 복지지원 사업(2억 18백만원) •평일 아동급식 지원(54백만원)
	주민복지과	63,368	64,008	△640	△1.00	•생계급여지원(△5억 55백만원), 주거급여지원(2억 34백만원) •자활지원(△3억 94백만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1억 36백만원)
	행복나눔과	210,910	210,071	838	0.40	•장애인 복지관 건립(11억), 기초연금 지원(12억 15백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18억 93백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억 5백만원) •어린이집 확충(1억 20백만원), 한부모 가정 지원(1억 58백만원)
	환경위생과	802	805	△3	△0.46	•집행잔액 반납
	청소행정과	25,652	26,260	△608	△2.32	•생활쓰레기 수거처리(△2억 70백만원) •자원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1억 4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4억 13백만원) •인력운영비(2억 16백만원)
안전도시국	소계	36,409	34,514	1,894	5.49	
	도시디자인과	9,730	9,958	△228	△2.29	•지하차도 유지관리비(88백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60백만원) •배수펌프장 관리(△50백만원)
	안전총괄과	11,919	10,293	1,625	15.80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15억)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55백원) •반환금(80백만원)
직속기관	건설과	13,284	12,788	496	3.89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2억) •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건축과	765	757	8	1.07	•반환금(18백만원)
	토지정보과	708	717	△8	△1.15	•집행잔액 반납
	소계	17,811	17,524	287	1.64	
	보건정책과	14,158	13,936	221	1.5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73백만원) •반환금(2억 60백만원)
	건강증진과	3,653	3,587	65	1.8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25백만원) •반송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27백만원)

다. 특별회계

1) 세입·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세입내역	세출내역
			금액	비율 (%)		
계	20,700	20,494	205	1.00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17,277	17,074	203	1.19	•세외수입 △165,600 (지난연도 주정차과태료 체납금징수) •지방교부세 130,000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시비보조금 239,000 (초등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130,000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 239,000 ▷재송초 일원 100,000 ▷신재초 일원 80,000 ▷반석초 일원 59,000 •주차위반 단속관리 △157,746 •인력운영비 △128,637 •예비비 175,60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진흥과)	52	52	0	–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의료급여 기금 (주민복지과)	1,020	1,018	2	0.21	•국고보조금 1,684 •시비보조금 421	•의료급여관리사 성과 포상금 2,105
지하수관리 (건설과)	1,813	1,813	0	–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기반시설 (건설과)	324	324	0	–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과)	212	212	0	–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규모는 2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방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3억 6천 9백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

○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1억 3천만원,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 2억 3천 9백만원, 예비비인 적립금을 1억 7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라.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				2017년도 제3회 추경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율(%)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율(%)
계	68	37,209	27,985	75.21	55	43,319	27,252	62.9
일반회계	65	33,768	26,029	77.08	51	39,786	24,418	61.4
특별회계	3	3,441	1,955	56.83	4	3,533	2,834	80.2

1)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37,209	27,985	
일반회계	소계	33,768	26,029	
기획조정실	청사포 몽돌해변 마스트플랜 용역	22	22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재무과	구청사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공사	815	557	공사시기 조정 등
	반송2동주민센터 내진보강	242	235	특별교부세 교부
교육협력과	센텀 씨름연습장 조성	295	80	업무협의 지연
	가상현실스포츠교실 보급 지원사업	28	28	예산 추가 확보후 사업진행
	송정테니스파크 조성	1,200	1,148	사업기간(2019. 1월까지)
	송정테니스파크 조성 시설부대비	7	7	사업기간(2019. 1월까지)
관광문화과	리버크루즈 사업 등	140	140	사업자 선정 지연 등
	수영강 LED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90	290	사업지연에 따라 사업비 이월
	수영강 개발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	50	과업기간 부족
	리버크루즈 홈페이지 제작비	10	10	사업지연에 따라 사업비 이월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및 리버크루즈 편의시설 조성비	718	716	사업기간 부족
	해운대해수욕장 족욕장 리모델링	80	80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48	48	사업기간 부족
	열린 관광지 무장애 웹페이지 제작비	7	7	사업기간 부족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265	265	사업기간 부족
	공공조형물(꽃의 내부) 유지관리	500	500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해운대 홍보영상물 제작	208,314	20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일자리 창출과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조성사업비	550	550	사업기간 부족
	반여 복합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비	1,615	1,000	행정절차 소요로 사업기간 부족
경제진흥과	빛의 거리 조성사업 관리 인건비	12	4	사업기간 미도래
	“ 자원봉사자 급량비	6	1	사업기간 미도래
	좌동재래시장 지주식 공영주차장 건립	500	433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관내 염소농가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	3	3	연내 사업 완료 불가능
	유기동물 입양센터 교육장 조성	300	300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늘푸른과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 인가 등	2,440	2,44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용역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전체 사업 연내 추진불가
	대천산림문화공원 기공식 등	10	10	연내 사업추진 불가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사업 이월	1,250	1,250	사업시행용역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반송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280	280	추가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
	장산등산로 정비	150	150	사업준공기한 미도래
행복나눔과	해운대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20	20	용역기간(2019. 3월) 미도래
	노인복지관(분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7	107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연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554	554	보조금 지급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애로
	신규 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97	97	리모델링 공사후 교재교구 구입예정
	신규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110	110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및 설치	283	283	연내 집행애로
	어린이집통학버스 아이 확인장치 설치지원	31	31	국토부 차량안전 기본기준 미확정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비	13	13	어린이집 확충지원에 따라 집행예정
안전총괄과	신시가지 일원 다목적 우수저류시설 3개소 설치사업	7,729	4,595	공사기간 미도래(2019. 5월)
	해운대보건소 외 2개소 내진보강	530	70	연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건설과	재송1동 3통주변 도로개설	300	174	수용재결 절차 이행 등 보상협의 지연
	반여4동 삼어마을 도로개설	2,050	2,005	보상협의 절차 이행 중
	좌동 재래시장내 도로개설	2,500	1,789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반여동 소로1-12호선 도로개설	1,000	102	실시 설계중,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중로3-93호선 도로개설	90	90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450	442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반송동 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300	151	실시 설계중, 완료시기 미도래
	반여, 재송동 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	300	204	실시 설계중, 완료시기 미도래
	애향길 일원 도로정비	600	600	지중화 및 애향길 공모사업과 연계추진
건설과	재송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	300	300	실시 설계중, 완료시기 미도래
	반여2·3동 일원 도로정비	300	300	실시 설계중, 완료시기 미도래
	장산중학교 앞 교차로 정비	200	200	실시 설계중, 완료시기 미도래
	반송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	150	150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도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350	350	실시 설계중, 완료시기 미도래
	우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00	300	2018. 9월 교부로 연내 사업기간 부족
건축과	공가 리모델링 사업	90	36	사업시기 미도래
보건정책과	아가 맘센터 설치비	228	10	오감발달실 사업비 이월조치
	아가 맘센터 개소식 비용	1	1	보건소 증축 준공기간에 맞춰 개소
	해운대보건소 증축 시설비	1,579	1,579	공사 준공기한 연장 예정
	“ 시설부대비	9	9	“
	“ 자산취득비	8	8	“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	100	보건소 증축공사 완공에 맞춰 구입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동백공원일원 정비사업	455	379	실시설계 중, 연내 공기 부족
	동천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98	160	하반기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
좌4동	좌4동 문화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89	74	공사기간 연장(2019. 1월 중순)

2)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특별회계	소계	3,441	1,955	
교통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130	130	2018. 10. 26 특별교부세 교부로 공기 부족
	반여4동 공영주차장 조성 손실보상금	1,100	1,008	행정절치 이행중, 사업기간 부족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공사비 및 매입비	2,211	817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해운대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8. 11. 2.

다. 상정일자 : 2018. 11. 19.(제2차 회의 의결)

3. 검토의견

○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도폐쇄기 전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한 불용액과 지방세 등 초과 세입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하기 위한 결산 추경으로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에서 146억 2천 9백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세입초과분(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대 유치에 따른 등록면허세)과 세출불용액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의 보전수입과목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며,

○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7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279억 8천 5백만원으로 다소 늘어났으며, 발생사유가 대부분 사업추진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른 것을 감안하면 예산반영 전에 이행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 이월하는 만큼 다음 회계연도에 반드시 집행하여 사고이월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정산, 특별교부금 교부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정리와 불용예산 삭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4. 심사결과 : 수정가결(위원회 삭감 요구사항 : 붙임)

가. 일반회계

1) 세입 : 원안과 같이 의결함

2) 세출 : 아래과 같이 의결함

구 분	예 산 액	증감	조정액	비고
계	551,539	△9	551,530	
일 반 공 공 행 정	23,685		23,685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1,778		11,778	
교 육	2,533		2,533	
문 화 및 관 광	19,094		19,094	
환 경 보 호	20,483		20,483	
사 회 복 지	319,073		319,073	
보 건	15,760	△3	15,757	
농 림 해 양 수 산	4,348		4,348	
산 업 · 중 소 기 업	1,607		1,607	
수 송 및 교 통	18,369		18,36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1,395	△6	11,389	
예 비 비	18,267		18,267	
기 타	85,147		85,147	

나.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의결함.

5. 증감 내역 : 별첨

6. 기타 의견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 요구사항

(단위: 천원)

부서별	페이지	예산항목	예산액	삭감액	삭감사유	비고
건설과	396	401-01 시설비 ○ 국유지 정비 (우동1164-10 컨테이너 등 대집행 비용)	6,500	6,500	사업 불필요	
보건 정책과	427	401-03 시설부대비 ○ 보건소 별관 및 치매안심 센터 준공식	9,000	3,000	예산 과다책정	
		총 계	**15,500**	**9,500**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안 번호	996

제안일자 : 2018년 11월 19일

제 안 자 : 김 경 호 의원

1. 목　　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행정사무감사 분야

○ 소관상임위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담당부서 및 대상업무 : 청소행정과(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사무)

4. 출석요구사항

○ 출석일자 : 2018. 11. 28.(수) 10:00

○ 출석장소 : 해운대구의회 제2회의실(주민도시보건위원회)

○ 신문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업체의 위탁업무 전반

○ 출석대상 :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 (4개소) 대표 및 실무책임자 (※ 명단 - 별첨)

구 해운대역 정거장부지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997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19일
발 의 자 : 문현신·김경호 의원
찬 성 자 : 원영숙 의원 외 15명

1. 주 문

○ 94%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역사부지와 철도부지는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업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은 분노를 느끼며, 정거장 부지에 대한 상업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해운대 주민들은 지난 80여년 동안을 철도로 인한 소음과 쇳가루, 매연 등을 온몸으로 감내해가며 고통 받는 삶을 살아오며, 구 해운대역이 이전함에 따라 그 공간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음.

○ 그러나 구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로, 개발사업의 주관사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특수목적법인인 SPC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함.

○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80여년 동안 철도로부터 받은 우리 주민의 고통을 잘 알기에 적극 동참하여 “구 해운

대역 정거장 부지의 상업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 주민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공원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결의안 : 붙임

구 해운대역 정거장부지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

해운대 주민들은 지난 80여년 동안을 철도로 인한 소음과 쇳가루, 매연 등을 온몸으로 감내해가며 고통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013년, 구 해운대역이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은 그 공간이 당연히 그 간의 고통을 감내한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 해운대역은, 그 후 끊임없는 주변 난개발의 도사림 속에 은밀한 개발 추진의 위기를 거듭 넘겨왔습니다.

구 해운대역은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역사는 코레일 소유로, 2016년 1월 민간업자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까지 했으나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상업개발을 포기하였습니다. 정거장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개발사업의 주관사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특수목적법인인 SPC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94%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역사부지와 철도부지는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업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해운대구 18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상업개발을 강력 규탄하는 '공원화 추진 결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운대구 의회는 80여년 동안 철도로부터 받은 우리 주민의 고통을 잘 알기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개발과 저밀도 개발이라는 미화된 단어에 절대 우롱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도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1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해운대구 의회는 (구)해운대역 정거장부지의 상업개발이 재거론 되고 있음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의 의사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구 해운대역 일대 공원화를 적극 추진하라
80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의 삶에 대한 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하나. 정거장 부지에 대한 상업 개발 계획을 즉시,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8년 11월 20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구 정 질 문 요 지 서

선 거 구	마선거구(반여2동, 반여3동)	질문의원	장성철
제 목	반여2 · 3동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은?	소요시간	20분

1.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리구의 반송2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방향은?

2. 지금까지 반여2·3동 지역 발전방향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례는 있는지?

3. 반여2·3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언제쯤 마련 계획인지?

4. 반여2·3동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구청장 의견은?

5. 구청장의 의지를 단시일 내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
2018. 11. 20.(화) 10:00 본회의장

— 제238회 정례회 구정질문 —

답변 요지서

해운대구
HAEUNDAEGU

구 정 질 문 답변요지서

제 목	반여2·3동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은?	질문의원	장성철

【질문요지】

1.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리구의 반송2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방향은?
2. 지금까지 반여2·3동 지역 발전 방향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례는 있는지?
3. 반여2·3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언제쯤 마련 계획인지?
4. 반여2·3동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구청장 의견은?
5. 구청장의 의지를 단시일 내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요지】

1.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리구의 반송2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방향은?
   도시재생사업은 옛 흔적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업이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재생역량을 강화하고 집중적인 공공 지원이 필요한 공간적인 범역을 선정하여 “장소 중심”의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음

구 정 질 문 답변요지서

제 목	반여2·3동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은?	질문의원	장성철

2-1. 지금까지 반여2·3동 지역 발전 방향 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

반여 · 반송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2.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례는 있는지?

용역 추진 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재개발, 공동주택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주민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반영을 하지 못하였음.

3. 반여2·3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언제쯤 마련 계획인지?

내년 본예산에 반여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6천만원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 반여2·3동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구청장 의견은?

반여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 형성된 후 점차 노후화·슬럼화되어 지역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의 재개발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춤 하향식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 등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벗어나 일자리·교육·보건·안전 및 지역주민의 관심사도 함께 고민하는 사회·문화적 통합재생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정 질 문 답변요지서

제 목	반여2·3동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은?	질문의원	장성철

5. 구청장의 의지를 단시일 내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2018.11.5.자 조직개편을 통해 자족형 도시공간으로 변모시킬 중심기구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 경제, 교통, 건설, 복지 등 부서 협업을 통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TF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여2·3동 주민센터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